

2025년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」사업(1유형) 안내

1. 대상 기업

- (모든업종 가능) **“기준 피보험자 수”**(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) 5인 이상(소수점 올림)인 우선지원 대상기업
 - * 1인 이상 5인미만이라도 가능한 경우: 지식서비스산업관련 업종, 문화콘텐츠산업관련 업종, 신재생에너지산업관련 업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(디자인산업, 핀테크산업, 게임산업육성 및 영상품 활성화 등), 청년창업기업(사업주가 청년, 사업 개시~7년 이내)
 - * 지원제외: 소비.향락업, 공공기관, 간접고용(파견업, 인력공급업 등),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, 부정수급 처분으로 지급제한 중인 기업,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은 지원제외
- (매출액)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액이 **기준 피보험자 수** 1인당 1,900만원 이상
 - * 심사 생략: 업력 1년 미만, 면세 사업자, 겸영사업자(면세+과세) 등
- (사업 단위 신청) 본사 단위 신청, 예외적으로 사업장 단위 신청 가능

2. 대상 청년

- (나이) 만15~34세 (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큼 연장, 최대 만 39세까지)
- (취업애로유형) **4개월 이상 실업, 고졸 이하 학력**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, 자립지원 필요 청년,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, 북한이탈청년,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(단, 대학 졸업예정자 제외)
 - * 지원 제외 조건: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(채용일 이전으로 휴폐업 처리 시 가능),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 (휴학포함)일 경우
- (고용형태) '25.1.1.~'25.12.31.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기간제(계약직)로 채용 후 **3개월 이내** 정규직으로 전환
- (근로조건) 수습기간 3개월 이하, 주 소정근로시간 30h 이상, 고용보험 가입

3. 지원내용 및 지원금 요건

- (지원한도) **기준 피보험자 수**의 50%까지 채용 가능(소수점 올림)
- (지원수준)▶기업: 채용 청년 1명당 월 60만원, 1년간 최대 720만원
- (신청시기)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
- (고용조정 제한) 지원대상 청년 **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** 인위적 감원(해고, 권고사직, 계약파기 등)이 없어야 함

4. 신청 방법: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

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기업 ↓ 운영기관(한국표준협회 선택)	⇒	참여신청서 검토 및 승인 지원협약체결 운영기관↔기업	⇒	청년 채용 후 명단 통보 기업 ↓ 운영기관	⇒	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신청 기업 ↓ 운영기관	⇒	지원금심사 후 지급의뢰 운영기관 ↓ 고용센터	⇒	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↓ 기업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 사업 참여 신청 전 이미 채용(정규직, 기간제)한 청년이 있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해야 함

5. 운영기관(문의처) : 한국표준협회 김영실 02-6240-4926 / 010-9076-5390 / ksayoungwork@gmail.com

2025년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」사업(2유형) 안내

1. 대상 기업

- ① (제조업) **“기준 피보험자 수”(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) 5인 이상(소수점 올림)인 우선지원 대상기업**
 - * **지원제외:** 소비·향락업, 공공기관, 간접고용(파견업, 인력공급업 등),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, 부정수급 처분으로 지급제한 중인 기업,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은 지원제외
- ② (매출액)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액이 **기준 피보험자 수** 1인당 1,900만원 이상
 - * **심사 생략:** 업력 1년 미만, 면세 사업자, 겸영사업자(면세+과세) 등
- ③ (사업 단위 신청) 본사 단위 신청, 예외적으로 사업장 단위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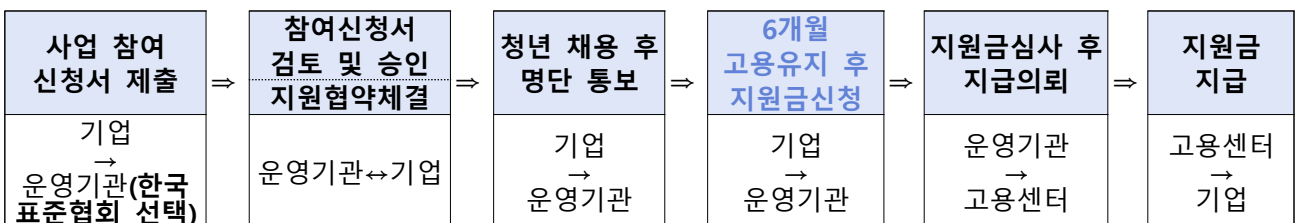
2. 대상 청년

- ① (나이) 만15~34세 (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큼 연장, 최대 만 39세까지)
- ② (고용형태) '25.1.1.~'25.12.31.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기간제(계약직)로 채용 후 **3개월 이내** 정규직으로 전환
- ③ (근로조건) 수습기간 3개월 이하, 주 소정근로시간 30h 이상, 고용보험 가입

3. 지원내용 및 지원금 요건

- ① (지원한도) **기준 피보험자 수**의 50%까지 채용 가능(소수점 올림)
- ② (지원수준)▶ 기업: 채용 청년 1명당 월 60만원, 1년간 최대 720만원
▶ 청년: 근속 18, 24개월당 각 240만원, 최대 480만원(장기고용인센티브)
- ③ (신청시기)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
- ④ (고용조정 제한) 지원대상 청년 **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** 인위적 감원(해고, 권고사직, 계약파기 등)이 없어야 함

4. 신청 방법: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



* 사업 참여 신청 전 이미 채용(정규직, 기간제)한 청년이 있는 경우 **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** 해야 함

5. 운영기관(문의처): 한국표준협회 김영실 02-6240-4926 / 010-9076-5390 / ksayoungwork@gmail.com